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86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장우, 김수련, 김아름, 이호정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노24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4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A¹⁾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희동(기소), 김수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장우, 김수련, 김아름, 이호정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고단59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10, 13, 15, 17~21, 23~25, 31, 32, 35~37, 40, 41, 44~46, 48, 52, 53, 58, 61, 63~66번 기재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유한회사 B는 2018. 12. 3. 유한회사 C로 상호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9. 11. 19. 유한회사 C를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 유한책임회사 E는 2019. 11. 21. 주식회사 D를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 유한책임회사 E는 2021. 10. 29. 유한책임회사 F으로 상호변경하였다. 주식회사 A은 2022. 4. 18. 유한책임회사 F을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사정을 들어 임직원들의 고의를 부정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²⁾ 제6호 (라)목은 '자기의 거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 삭제

10. 부당한 지원행위」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참조).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형사처벌 조항도 함께 두고 있으므로, 행정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할 때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을 관철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공정거래법령이 '공정거래저해성'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그 의미가 다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범자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복잡한 법률적 또는 경제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된다. 반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실효적인 행정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불확정개념을 사용할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 역시 형벌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인식해야 할 대상으로서 '고의'의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제반 사정의 형량과 분석을 거쳐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판단까지도 요구되는 경우나 사용된 수단의 성격과 실질이 가격할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구성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이처럼 고의의 증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심사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달리 제재적 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그 임무 해태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재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제재적 처분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 책임주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참조).

나. 전제 사실

1) 배달앱은 2010. 4.경 주식회사 G이 'H'을 출시하면서 국내에 등장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I이 2011. 3.경 'J'을, 피고인 회사가 2012. 8.경 'K'를 출시하였다. 배달앱 주요 3사의 2015~2017년 매출액 비중은, 주식회사 I(J)이 55%, 61.6%, 64.5%, 피고인 회사(K)가 26.3%, 26.5%, 26.7%, 주식회사 G(H)이 18.7%, 11.9%, 8.8%였다.

2) J 등 다른 배달앱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요



금제(이하 '월정액요금제'라 한다)를 운용하였으나, 후발 사업자인 피고인 회사는 K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월정액요금제 외에 K를 통한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요금제(이하 '수수료요금제'라 한다)를 운용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며 K 가입을 유도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들은 피고인 회사와 K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수수료요금제를 선택하였다.

3) 피고인 회사는 수수료요금제에 가입한 음식점들이 K에서 판매하는 가격(이하 'K 판매가격'이라 한다)을 다른 주문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이하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이라 한다)보다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그로 인해 일반수요자들이 K를 통한 주문은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K 이용을 기피할 것을 우려하였다.

4) 그에 대한 대책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L 등은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2013. 6. 26.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최저가보장제³⁾를 시행하고 SIC(Sales Inbound Center)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L, SIC부서 담당 직원 등이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음식점들에게 K 판매가격 및 K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 및 서비스와 동일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음식점과 K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이하 '이 사건 경영간섭'이라 한다)함으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다.

2) 차별금지조항

3) 피고인 회사는 내부적으로 M로 표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3. 6. 26.경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배달음식점과 K 서비스이용계약 시 "배달음식점은 본 계약상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 시 배달음식점의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항(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이하 '차별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약관(제3조 제1항, 제11조 제3항)을 사용하였는데, 위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란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의 차별금지조항은 피고인 회사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차별금지조항은 배달음식점이 피고인 회사와 K 서비스이용계약 시 설정된 거래조건이고, 이 사건 경영간섭은 차별금지조항의 적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L, SIC부서 담당 직원 등에게 경영간섭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회사는 'K'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 당시부터 업계 최초로 온라인 주문과 수수료 요금제를 도입하였다. 다른 배달앱 플랫폼 회사들은 월정액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달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앱 판매가격을 타 주문경로의 판매가격과 달리 할 필요가 적었을 것이고, 배달앱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도 배달앱 판매가격이 타 주문경로의 판매가격과 동일한 지 여부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K'는 출시 당시부터 수수료 요금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배달음식점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도 증가되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므로 'K' 판매가격을 타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 회사가 수수료 요금제를 채택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 피고인 회사가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하였지만, 이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이라기보다는, 배달앱 플랫폼이 기존의 전단지 배부 방식의 광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배달앱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격이 전단지를 통한 전화주문 등의 판매가격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배달음식점 약관에 위와 같은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회사가 배달앱 플랫폼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기 이전에 'K' 앱을 출시하면서 업계 최초로 온라인 주문과 수수료 요금제를 출시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K'와 계약한 배달음식점으로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월정액 요금제보다 수수료 요금제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배달앱 플랫폼이 기존의 전단지 광고방식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K' 판매가격이 타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요금제가 월정액 요금제보다 불리하자 'K' 판매가격을 타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K'는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있었고,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배달음식점들에 대하여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정한 차별금지조항에 기하여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계약해지를 하였는바,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은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설사 피고인 회사가 배달음식점들에 대하여 배달음식점 약관에서 정한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개개의 배달음식점들에 대해 각각 차별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지 언정, 이로써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의 경영에 간섭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법 시행



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하나로 '경영간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의2에서는 '경영간섭'을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물품·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해임'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생산물품·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해임'이나 '거래상대방의 생산물품·시설규모·생산량'은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히 이해될 수 있으나 '거래내용'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거래내용'을 넓게 이해한다면 거래상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간섭이 너무 쉽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내용'은 그 용어의 개념 자체에 한정하여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경영간섭'으로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 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K' 판매가격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영간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라야 하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점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5.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후 피고인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전원회의를 거쳐 2017. 2.경 피고인 회사에 최저가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보장제와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을 폐지하였는바,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저가보장제 폐지를 안내받기 전에 최저가보장제의 시행과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3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하나로 '경영간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경영간섭'의 개념과 관련하여 '거래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하나인 '경영간섭'의 개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거래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음에도 위 법령 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간섭'의 개념에서 언급하는 '거래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고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배달앱 플랫폼과 같이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새로운 가격구조의 출시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그 고의의 인정여부를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명확한 지침이나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를 쉽게 인정한다면 기술혁신과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꼴이 될 수 있고, 이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당심의 판단

피고인 회사는 차별금지조항을 거래조건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을 구하며 이 사건 경영간섭 행위를 한 것으로서, 원심이 드는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배달음식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배달앱마다 음식 가격이 다르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앱별로 음식의 가격이 어떠한지 비교하고 음식 주문을 하여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다.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으로 배달앱별로 음식 가격이 다르지 않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선호하는 배달음식점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음식의 맛, 서비스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지와 함께 주문·결제의 편의성, 적립·할인혜택



등으로 배달앱을 선택하고 자신이 같은 음식을 더 비싼 가격에 주문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그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배달음식 시장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매출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들의 경우 월정액요금제에 비하여 수수료요금제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텐데, 피고인 회사의 수수료요금제 서비스에 가입한 음식점들이 K에서의 판매가격을 다른 주문경로보다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인식한 소비자가 K를 통해 그 음식 주문을 하지 않게 되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수수료요금제 서비스를 존속시키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음식점들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월정액요금제와 수수료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다) 피고인 회사와 같은 배달앱 사업체로서는, 음식 맛으로 경쟁력이 있는 음식점들을 배달앱 서비스 이용자로 많이 가입시킬 필요가 있고, 언제든지 경쟁 배달앱 사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무리하게 수수료를 증액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차별금지조항 적용으로 수수료 지출이 커져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차별금지조항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바로 이를 수는 없고, 다른 여러 사정과 함께 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

라) 음식점의 경우 배달앱을 이용하며 그 대가로 배달앱 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므로 배달앱 주문 시 음식가격에 수수료 비용을 반영할 유인이 있다. 이에 대하여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하여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에 의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게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하였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음식가격이 직접 판매가격보다 낮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배달음식점에 K에서의 판매 가격을 다른 배달앱에서의 판매 가격과
같이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와 같이 요구하는 가격도 직접 판매가격보다는 낮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
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이 사건 경영간섭 행위가 최종 종료되고 약 6년이
지난 2023. 1. 12. 비로소 공정거래위원회예규로 제정되었다.

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
다)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
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위와 같은 목적의 대규
모유통업법의 규정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배달음식의 판매 중개를 하는 배달앱 시장
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경영간섭 행위의 불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조가 될 것으
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는 2023. 8. 8. 신설된 조항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
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영활동 간
섭의 유형 또는 기준)는 2024. 2. 6. 신설된 조항으로,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
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종업원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2. 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 또는 승인의 요구, 판매촉진행사의 제한 또는 중단 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
5.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이 사건 차별금지조항은 배달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가격, 서비스와 K의 판매가격,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호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의 정도(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가격, 서비스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1)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분석과 판단을 거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경영간섭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경영간섭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피고인 회사가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나 배달음식점의 배달앱 사업체에 대한 거래의존도,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배달음식점들의 저항을 우려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에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회사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이 고의를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단 유탈을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결국은 고의를 부인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것인데, 여러 구성요건 중 일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며 나머지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판의 누락

가.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10, 13, 15, 17~21, 23~25, 31, 32, 35~37, 40, 41, 44~46, 48, 52, 53, 58, 61, 63~66번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1. 20. 위 각 공소사실은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는 것이어서, 명백히 일부 공소취소의 취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은 공소취소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10, 13, 15, 17~21, 23~25, 31, 32, 35~37, 40, 41, 44~46, 48, 52, 53, 58, 61, 63~66 기재 각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숙 _____

 판사 김정곤 _____

 판사 최해일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밀명처리일자 : 2024-08-06

범죄일람표

순번	배달음식점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유	배달음식점에 가격 변경 통 요구	배달음식점의 가격 등 변경 또는 생략하지
1		특정 메뉴의 [] 주문 가격이 직접 주문할 때보다 2,000원 높음	2013. 7. 9.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3. 7. 10. [] 판매가격 인하
2		모든 세트메뉴의 [] 주문 가격이 전단지 가격보다 1,000원 비쌈	2013. 7. 17.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3. 7. 22. [] 판매가격 인하
3		[] 주문 가격이 전단지 가격보다 비쌈	2013. 8. 13.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3. 10. 17. [] 판매가격 인하
4		[] 주문 가격이 전단지 가격보다 비쌈	2013. 8. 14.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3. 8. 21. [] 판매가격 인하
5		[] 주문 가격이 전단지 가격보다 비쌈	2013. 8. 27.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3. 8. 27. [] 판매가격 인하
6		[]로 주문할 경우만 배달료 2,000원 수수	2013. 11. 17. [] 배달료 삭제 요구	2013. 11. 27. [] 배달료 삭제
7		불량발 [] 판매가격이 직접 주문할 때보다 1,000원 비쌈	2013. 11. 20.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3. 11. 20. [] 판매가격 인하
8		[]로 주문할 경우만 배달료 1,000원 별도 수수	2013. 11. 28. [] 배달료 삭제 요구	2014. 3. 5. [] 배달료 삭제
9		[] 판매가격이 직접 주문할 때보다 5,000원 비쌈	2014. 1. 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4. 1. 22. [] 판매가격 인하
10		비키의 [] 가격이 전단지보다 1,000원 비쌈	2014. 2. 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4. 2. 7. [] 판매가격 인하
11		장동 및 복음발 [] 판매가격이 직접 주문할 때보다 각 500원, 알뜰세프 가격이 1,000원 비쌈	2014. 2. 24.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4. 2. 24. [] 판매가격 인하
12		온카스의 [] 판매가격이 직접 주문할 때보다 500원 ~ 1,000원 비쌈	2014. 3. 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4. 3. 7. [] 판매가격 인하
13		[]를 통해 주문시 '수요일 30% 할인'을 진행하지 않음	2014. 3. 7. []에서 할인행사 대상 메뉴삭제 요구	2017. 3. 10. []에서 할인행사 대상 메뉴삭제
14		[] 주문 가격이 전단지 가격보다 비쌈	2014. 3. 1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4. 3. 18. [] 판매가격 인하
15		치킨의 [] 판매가격이 전단지 가격보다 1,000원 비쌈	2014. 4. 10. 판매가격 변경 요구	불상일때 [] 판매가격 인하
16		피자의 [] 판매가격이 직접 주문할 때보다 1,000원 비쌈	2014. 4. 7.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4. 5. 9. [] 판매가격 인하
17		모든메뉴의 [] 판매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500원 비쌈	2014. 4. 10.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4. 7. 29. [] 판매가격 인하
18		와요알 현금 결제 시 후라이드 치킨 1마리를 12,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에서 미진행	2014. 4. 28. []에서 대상 메뉴삭제 요구	2014. 4. 28. []에서 대상 메뉴삭제
19		매장에서 파는 피자 주문시 콜라 서비스를 제공하나 []로 주문시 콜라 서비스 미제공	2014. 6. 19. 제공 서비스 통알 요구	2014. 6. 19. 제공 서비스 통알
20		[]로 주문시 직접 전화 주문시 제공되는 콜라(500ml) 서비스 미제공	2014. 8. 25. []에서도 콜라 서비스 제공 요구	2014. 8. 27. []에서도 콜라 서비스 제공
21		오리지널 라지 슈퍼슈트림 피자의 [] 판매가격이 홈페이지 기재 가격보다 2,000원 비쌈	2014. 9. 1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4. 9. 16. [] 판매가격 인하
22		모든 메뉴의 [] 판매가격이 직접 전화주문할 때보다 1,000원 비쌈	2014. 10. 1.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4. 10. 28. [] 판매가격 인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23	수정 요청한 ☐ 판매가격이 주문북 기재 가격보다 비쌌	2014. 10. 24. 판매가격 수정 거부	2014. 10. 28. ☐ 판매가격 미수령
24	세트메뉴의 ☐ 판매가격이 다른 배달업 판매가격보다 2,000원 비쌌	2014. 11. 11. 판매가격 변경 요구	불상일에 ☐ 판매가격 인하
25	☐ 로 주문시 '프리미엄 R 피자 3,000원 할인, 프리미엄 L 피자 5,000원 할인' 행사 미진행	2014. 12. 22. 판매가격 변경 요구	불상일에 ☐ 에서도 할인행사 진행
26	☐ 로 주문시 다른 주문정보보다 배달료가 1,000원 비쌌	2014. 12. 26. 배달료 변경 요구	2014. 12. 27. 다른 주문정보의 배달료 인상
27	특별의 ☐ 판매가격이 직접 전화 주문할 때보다 1,000원 비쌌	2015. 1. 2.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1. 14. ☐ 판매가격 인하
28	☐ 로 주문시 카드결제는 2,000원, 현금결제는 1,000원 추가 수수	2015. 3. 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3. 6. ☐ 판매가격 인하
29	치킨의 ☐ 판매가격이 전단지 가격보다 1,000원 비쌌	2015. 1. 21.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1. 21. ☐ 판매가격 인하
30	☐ 주문시에만 일부 배달지역에 대한 배달료 수수	2015. 3. 17. 배달료 변경 요구	2015. 3. 17. 배달료 수수하던 배달지역을 배달가능지역에서 삭제
31	매장에서 현금결제시 제공되는 콜라 서비스를 ☐ 주문시 미제공	2015. 2. 4. 제공되는 서비스 통일 요구	2015. 4. 28. 다른 주문정보에서도 콜라 서비스 미제공
32	☐ 로 주문할 경우에만 배달료 2,000원 수수	2015. 4. 27. 다른 배달업과 배달료 통일 요구	2015. 4. 27. ☐ 배달료 삭제
33	메뉴의 ☐ 판매가격이 전단지 가격보다 5,000원 더 비쌌	2015. 2. 1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2. 16. ☐ 판매가격 인하
34	메뉴의 ☐ 판매가격이 다른 배달업 판매가격보다 500원~1,000원 비쌌	2015. 2. 23.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3. 5. ☐ 판매가격 인하
35	☐ 판매가격이 다른 주문정보의 가격보다 2,000원 비쌌	2015. 3. 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3. 9. ☐ 판매가격 인하
36	매장에서 현금 결제시 요일메뉴 할인되나, ☐ 에서 주문시 할인되지 않음	2015. 3. 24. ☐ 에서도 할인 적용 요구	2015. 3. 24. 매장에서 할인 적용되던 메뉴를 ☐ 에서 삭제
37	김치찌개, 찜반국수의 ☐ 판매가격의 ☐ 판매가격보다 비쌌	2015. 3. 24.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7. 31. ☐ 판매가격 인하
38	왕수육의 ☐ 판매가격이 다른 주문정보의 가격보다 1,000원 비쌌	2015. 4. 23.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4. 24. ☐ 판매가격 인하
39	순살 양념바베큐 및 단강고 살러드의 ☐ 판매가격이 다른 배달업의 판매가격보다 각 2,000원 비쌌	2015. 4. 22.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4. 24. ☐ 판매가격 인하
40	편지세트 및 편지세트2 가격의 ☐ 판매가격이 직접 전화주문할 때보다 각 1,000원 및 2,000원 비쌌	2015. 7. 24.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7. 24. ☐ 판매가격 인하
41	닭발 세트의 ☐ 판매가격이 직접 전화주문할 때보다 3,000원 비쌌	2015. 5. ~ 7.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7. 10. ☐ 에서 세트메뉴 삭제
42	돈까스의 ☐ 판매가격이 다른 배달업 판매가격보다 3,000원~4,000원 비쌌	2015. 7. 2.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7. 2. ☐ 판매가격 인하
43	메뉴의 가격이 전단지 기재 가격보다 1,000원 비쌌	2015. 7. 30.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7. 31. ☐ 판매가격 인하
44	피자 알뜰세트A의 ☐ 판매가격이 직접 주문할 때보다 2,000원 비쌌	2015. 7. 9.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7. 21. ☐ 판매가격 인하
45	피자 세트메뉴의 ☐ 판매가격이 직접 전화주문 및 ☐ 판매가격보다 1,000원 비쌌	2015. 7. 28.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7. 29. ☐ 판매가격 인하
46	치킨의 ☐ 판매가격이 ☐ 판매가격보다 1,000원 비쌌	2015. 7. 29.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7. 29. ☐ 판매가격 인하
47	돈까스의 ☐ 판매가격이 ☐ 판매가격보다 메뉴별로 500원~1,000원 비쌌	2015. 8. 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8. 13. ☐ 판매가격 인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6

48	특정 매뉴얼의 [] 판매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불상액 비참	2015. 12. 18.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12. 29. [] 판매가격 인하
49	모든 매뉴얼의 [] 판매가격이 직접 전화주문할 때보다 2,000원씩 비참	2015. 10. 14.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10. 14. [] 판매가격 인하
50	모든 매뉴얼의 [] 판매가격이 [] 판매가격보다 2,000원씩 비참	2015. 11. 3.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11. 11. [] 판매가격 인하
51	[]로 주문할 때에만 배달료 1,000원 수수	2015. 11. 4. 다른 주문경로와 배달비 통일 요구	2015. 11. 4. [] 배달료 삭제
52	특별의 [] 판매가격이 [] 판매가격보다 3,000원 비참	2015. 11. 19.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5. 11. 19. [] 판매가격 인하
53	[]로 주문시 배달료 2,000원 수수	2016. 1. 27. 다른 주문경로와 배달비 통일 요구	2016. 2. 1. [] 배달료 삭제
54	[]로 주문시 배달료가 직접 전화 주문할 때보다 1,000원 비참	2016. 1. 27. 다른 주문경로와 배달비 통일 요구	2016. 1. 27. 다른 주문경로와 배달비 통일
55	[]에서만 점심 메뉴 삭제 요청	2016. 1. 26. []에서만 점심메뉴 삭제 불가 고지	2016. 1. 28. 서비스이용계약 해지
56	업도리점(점)의 [] 판매가격이 전단지 기재 가격보다 2,000원 비참	2016. 1. 2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6. 1. 28. 서비스이용계약 해지
57	특별의 [] 판매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1,000원 비참	2016. 2. 7.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6. 2. 7. [] 판매가격 인하
58	직접 전화 주문하여 현금결제시 1,000원 할인 제공하나, []로 주문시 할인 미제공	2016. 3. 2. []에서도 할인 제공 요구	[]에서 할인제공 요구 거부
59	특별의 [] 판매가격이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비참	2016. 3. 23.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6. 3. 23. 서비스이용계약 해지
60	치킨의 [] 판매가격이 [] 판매가격보다 1,000원 비참	2016. 3. 28.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6. 4. 12. [] 판매가격 인하
61	치킨의 [] 판매가격이 다른 주문경로 판매가격보다 1,000원 비참	2016. 4. 29.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6. 5. 10. [] 판매가격 인하
62	[] 판매가격이 [] 및 [] 주문가격보다 불상액 더 비참	2016. 5. 4.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6. 5. 4. [] 판매가격 인하
63	[]로 주문할 때에만 배달료 수수	2016. 5. 30. 다른 주문경로와 배달비 통일 요구	2016. 5. 31. [] 배달료 삭제
64	수경 요청한 [] 판매가격이 [] 판매가격보다 비참	2016. 5. 20. []과 동일한 가격 설정 요구	2016. 6. 13. 서비스이용계약 해지
65	[] 판매가격이 배달료 및 다른 배달료 판매가격보다 2,000원 비참	2016. 6. 17.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6. 6. 17. [] 판매가격 인하
66	[] 판매가격이 [] 판매가격보다 비참	2016. 8. 26.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6. 8. 26. 서비스이용계약 해지
67	[] 판매가격이 직접 전화 주문할 때보다 비참	2016. 11. 17. 판매가격 변경 요구	2016. 11. 24. [] 판매가격 인하
68	[]로 주문할 때에만 배달료 500원 수수	2016. 12. 5. [] 배달료 삭제 요구	2016. 12. 5. [] 배달료 삭제